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39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바.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.
- 사.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확히 함(안 제10조).
- 아.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

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
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9. 6. ~ 9. 1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,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·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,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난임(難妊)”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

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,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 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
2.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·정보제공 지원사업
3.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4.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중단)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
2.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
3.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, 중복·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서울특별시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## □ 모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2.>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2.>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

[시행 2020. 12. 3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38호, 2020. 12. 31., 제정]

제5조(모자보건사업)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
2. 고위험 임신부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
3.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, 시술비 지원
4.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5. 임신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
6.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